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 구현적합성 평가 계약서

평가신청 소프트웨어:

계약 당사자

(갑):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

(을) :

(갑)과 (을)은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(이하 "소프트웨어"이라 한다)에 대한 구현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- 제1조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(갑)이 (을)의 신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현적합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(갑)과 (을)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데 있다.
- 제2조(평가의 의의 등) ①소프트웨어에 대한 구현적합성 평가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(갑)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써, (을)은 (을)의 이익과 판단에 의하여 평가를 신청한다.
 - ② (갑)과 (을)은 (갑)의 구현적합성 인증이 (을)의 소프트웨어의 구현적합성에 대한 법적인 보증내지 대외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.
- 제3조(신의성실) (갑)과 (을)은 소프트웨어의 평가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규칙 및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제출물 보완) ①(갑)이 평가를 위하여 (을)에게 제출물 보완을 요청한 경우 (을)은 요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물을 보완하여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(갑)은 (을)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출물 보완을 아니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물 보완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
- 제5조(평가중단) ①(갑)은 (을)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물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동일 사안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3회까지 제출물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 또는 중단 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.
 - ②(갑)은 (을)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물의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타 (을)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가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다. ③(갑)은 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(을)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제6조(제출물 보안유지 및 관리) ①(갑)은 (을)이 평가를 위해 제출한 모든 제출물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제출물이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(갑)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